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학대행위 녹음·청취 허용〉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4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전제 법률안 개요	3
2.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공개 대화 녹음· 청취 허용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11. 18.
3. 회 부 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그러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그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III. 검토의견

1. 전제 법률안 개요

- 개정안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 이 법 개정을 전제로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3)〉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아동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 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0)>¹⁾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노인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인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1)>²⁾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② (생략) <u><신설></u>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 1)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1월 18일 제안되어,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10일 상정되었음.
- 2)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1월 18일 제안되어,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6년 3월 10일 상정되었음.

2.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허용

☐ 개정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녹음의 증
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第3條(통신 및 對話秘密의 보호)	第3條(통신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の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 수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및 「장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u>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u> <u>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수집하</u> <u>기 위한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또는 청취 금지를 통신제한조치로 규정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과 함께 금지되는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이하 “대화감청”이라 한다)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⁴⁾,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3)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4조⁵⁾를 대화감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들을 학대행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의 증거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됨.⁷⁾ 반면, 사인이 수집한 증거가 같은 법에서 보호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밖에 법률상 명시적인 증거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4)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5)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의2의 취지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인격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절차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왔음.⁸⁾

다만 최근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하여 이를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사정들을 이유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⁹⁾

□ 다만,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¹⁰⁾

특히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18조에 따른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수단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음.¹¹⁾

개정안은 학대피해자의 보호 및 증거수집이라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나,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제3자에 의한 비공개 대화의 녹음·청취를 대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용함으로써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를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10)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11)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설계와 내용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 사생활의 비밀을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인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음.¹²⁾

비공개 대화에는 개인의 가족관계·감정·생활관계 등 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제3자가 이러한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청취할 경우 학대행위와 직접 관계없는 사적 대화까지 함께 지득 또는 저장될 수 있고, 특히 녹음자료는 사후에 반복적으로 재생 및 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 내용의 수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개정안을 입법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제3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허용하려는 것이나, 동일한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제14조제1항은 개정하지 않고 있어 두 규정 간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현행 제14조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조의 증거사용금지 규정 등을 해당 녹음·청취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12)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따라서 제3조제1항제6호만 신설할 경우 체계해석상 제6호가 제14조제1항의 예외가 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는 증거가 유죄입증에 중요한 증거일 경우 행위의 적법성뿐 아니라 증거능력 및 형사처벌까지 좌우할 수 있는¹³⁾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제14조제1항에도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두 조문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다른 법률의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신고하려는 자’,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등의 요건¹⁴⁾은 그 의미와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떠한 녹음·청취가 적법한 것인지를 행위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수사기관

1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II]-영장-, 2022, pp.356~361.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0)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노인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인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1)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3)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아동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사유’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녹음 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현행법 위반으로 증거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개정안이 해결하려는 증거능력의 불확실성을 다른 형태로 남기지 않도록 허용요건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⁵⁾

- 셋째, 개정안은 제3자가 상대방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대화 비밀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녹음·청취의 필요성이나 기간 및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계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도 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입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¹⁶⁾

- 한편, 개정안 및 연계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15) 다만 개정안의 요건을 충족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성이 제거되더라도 해당 녹음자료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_2214350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 p.7

같음.

- 법무부는 개정안이 영장주의 및 적벌절차 원칙을 우회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제3자 녹음 허용의 예외가 타 범죄 유형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의 필요성, 피해자 인권보호 및 구제의 필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중대한 예외적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학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활동 위축,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확대 및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취약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외 적용 대상 범위 한정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5